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저소득층 기준연금액 일시 인상 및 부부감액 폐지〉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9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차상위계층 이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일시 인상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9
2. 부부감액제도 폐지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1
다. 관계 기관 의견	15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9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3.

(3) 회 부 일 : 2025. 6.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기준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 → '23년 38.2%),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사람들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한편,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족한 노후 소득

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차상위계층 이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일시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¹⁾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6년도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4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u>100분의 40</u>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u>기준연금액은 30만원</u> 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40만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통계청이 2024년 12월 발표한 ‘202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23)은 39.8%로 10년 전보다 7.7%p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분포(Income Distribution)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33개 회원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22)을 살펴보면 우리나라(39.7%)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33개국 평균: 14.9%).

< 처분가능소득 기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우리나라 >

(단위: %, %p)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상대적 빈곤율	47.5	45.9	44.2	44.8	43.8	43.3	43.2	40.5	39.3	39.7	39.8
전년 대비	0.7	△1.6	△1.7	0.6	△1.0	△0.5	△0.1	△2.7	△1.2	0.4	0.1

주: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란 균등화 처분가능 중위소득의 50%(빈곤선) 이하에 속한 66세 이상 인구를 전체 66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임

자료: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처분가능소득 기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OECD(2022) >

(단위: %)

구분	평균 ^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상대적 빈곤율	14.9	23.1	14.9	6.1	11.6	18.3	13.1	18.8

주: OECD에 2022년도 자료가 등록된 33개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B

□ 개정안은 차상위계층²⁾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적용되는 2026년도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4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기초연금제도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하면서,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2024년 1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급자는 약 523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약 671만명)의 78% 수준인바, 차상위계층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6년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일시 인상³⁾하는 데 따르는 추가재정소요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차상위계층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24. 12월 현재) >

(단위: 만명, %)

구 분	합 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1인 수급	2인 수급
전체 수급자(A)	671	323	53	295
차상위계층 이하(B)	523	283	32	208
비율(B/A)	77.9	87.6	60.4	70.5

자료: 보건복지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참고로, 2025년도 기준연금액 342,510원임.

□ 둘째, 당해연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여 결정·고시되므로,⁴⁾

개정안의 경우 2026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인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 계층별로 기준연금액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면서도 특정 시점(2021년)부터는 모든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인상 목표액(30만원)에 일치되도록 조정할 입법례도 있으므로, 2026년 이후 소득 계층별로 기준연금액을 이원화하여 계속 적용할 것인지, 일정 시점에는 일치하도록 조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18년 3월 법률 제15536호로 개정·공포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개월간 적용된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직전 기간(2018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준연금액(209,960원) 대비 19.1% 일시 인상되었고,⁵⁾

2019년 1월 법률 제16241호로 개정·공포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수급자의 기

4) 「기초연금법」

제5조(기준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18. 3. 27. 공포 2018. 9. 1. 시행>

제5조(기준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준연금액을 2019년 4월부터 우선 30만원으로 일시 인상한 다음, 2020년 1월 법률 제16868호로 개정·공포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수급자에 대하여서까지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모든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일시 인상된 사례가 있음.⁶⁾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일시 인상 사례 >

(단위: 원)

구 분	'18년 4~8월	'18년 9월 ~'19년 3월	'19년 4~12월	'20년 1~12월	'21년 1~12월
전체 수급자				254,760 (+0.4%)	
소득인정액 100분의 40 이하	209,960 (+1.9%)	250,000 (일시)	253,750 (+1.5%)	300,000 (일시)	300,000 (일시)
소득인정액 100분의 20 이하			300,000 (일시)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직전 기간 대비 기준연금액 인상률임

□ 셋째,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할 뿐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구 구성원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개인 단위로만 소득인정액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⁷⁾

6) 법률 제1624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19. 1. 15. 공포 2019. 4. 1. 시행>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0. 1. 21. 공포 2020. 1. 21. 시행>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7)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甲과 그 자녀인 乙(30세)만으로 구성된 2인가구라 하더라도 해당 가구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가구)'로서 甲의 소득인정액만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구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⁸⁾에 따라 가구 단위로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제로 측정된 금액인바,

기준 중위소득을 안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득층 선정기준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65세 이상으로서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30세)과 거주하는 3인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선정기준액’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2025년 현재 2,512,676원)로 할지 또는 자녀 丙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하게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2025년 현재 1,966,329원)로 할지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제적 측면에서는, 현행법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⁹⁾에 따라 이미 실효된바, 조문 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할 시 기존 부칙에 유효기간 관련 사항이 그대로 남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2의 내용 그대로를 제5조의3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¹⁰⁾

□ 또한, 안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약칭하고 있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9)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년 5월, 832-833면.

으나, ‘기준 중위소득’은 이 법의 다른 조문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약칭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인용 대상 법률인 「국민기초생활^V보장법」의 제명상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인 사람에 대한 2026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우선 일시 인상한 다음 202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30% 초과 5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일시 인상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2호)과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에게 보충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6호) 등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 노인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이 논의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 부부감액제도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삭 제>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 -----기초연금액을----- ----- ----- ----- -----.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③ ----- -----기초 연금액을----- ----- ----- ----- -----

현행	개정안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생략)	----- -----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의 20%씩을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¹¹⁾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여 부부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부부감액제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적용되었는데,

처음에는 각각의 연금액을 16.5%씩 감액하기로 하여 2007년 4월 법률 제8385호로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제2항이 200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 시행 이전인 2007년 7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 측면이 강조되며 감액률이 20%로 3.5%p 상향되었고,¹²⁾

11)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2)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07. 6. 29., 7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면서 2014년 5월 법률 제12617호로 제정·공포된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 감액률을 20%로 하는 부부감액제도가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부부감액제도는 가구원이 공동으로 지출하는 유형의 비용(예: 주거비) 등으로 인하여 가구별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는데,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이하 “단독가구”라 한다)의 월평균 소비지출(67.8만원)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이하 “부부가구”라 한다)의 월평균 소비지출(113.7만원) 간 비율은 1:1.68로 나타난바,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씩 삭감하는 부부감액(1:1.6)을 적정 수준이라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¹³⁾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단위: 천원)

구 분	단독가구(A)	부부가구(B)	비율(B/A)
월평균 소비지출	678	1,137	1.68
주거·광열수도비	135	189	1.40
식비	293	436	1.49
피복비	26	39	1.54
보건의료비	98	198	2.02
교통·통신비	78	165	2.11
문화생활비	8	18	2.29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13) 김만수·이예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노인 소비지출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4-08, 국민연금연구원, 2024, 68면.

□ 그러나, 가구별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아니한다는 부부감액제도의 도입 취지는 ‘부부가구가 아닌 다른 유형의 2인가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오직 부부가구에 대하여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구와 다른 유형의 2인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예컨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90세)와 아들(66세)로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 부부가구가 아니므로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음.

□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¹⁴⁾에서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200%가 아닌 16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가구가 ‘급여액 산정’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의 단계에서도 다른 유형의 2인가구에 비하여 이중으로 불리하게 처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65세 이상인 甲과 乙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200만원이라 할 때, 甲과 乙이 부부이면 합산 소득인정액(400만원)이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2025년 현재 364만 8천원)을 초과하여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지만,

甲과 乙이 부부 외의 관계로서 2인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각자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2025년 현재 228만원)을 적용받아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부부감액제도도 적용

14)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되지 아니함.

□ 다만,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되는 ‘최저보장수준’에도 가구별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으며,¹⁵⁾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호주·네덜란드 등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부부감액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25) >

(단위: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1인가구 대비 감액률	-	17.8	30.0	36.3	40.6	43.8	46.3

자료: 보건복지부

< 부부감액제도 해외 사례 >

(단위: %)

구분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단독 대비 부부급여액 감액률	10.0	10.5	14.1	24.6	31.5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참고로, 부부감액제도를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김태년의원(의안번호 제4027호) 및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1669호)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노인 부부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부감액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부부감액제도의 도입 취지, 노인빈곤 완화,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506